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참고자료

2026. 8. 26.



행 정 안 전 부

목 차

I 지방세기본법

1.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법§2, §8 등) 2
2.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법§2, §8 등) 3
3.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법§21②) 4
4.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40③) 5
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안 법§46) 6
6.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법§88①) 7
7.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법§108, 영 별표1) 8
8.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법§108의3, §147, 영§67의2, 별표4) 9
9.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리체계 등 개선(안 법§151②) 10

II 지방세징수법

1. 통합특별시 관련 지방세징수법령 개정(안 법§11의2, §17, §19, 영§24 등) 12
2.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법§32조의2, §108, 영§38조의4, §95) .. 13
3.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안 법 §61③) 14
4. 즉시 압류해제 요건 추가(안 법§63①) 15
5. 압류한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법§71) 16

Ⅲ 지방세법

1. 유연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법 §7⑦ 등)	18
2. 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 정비(안 법§7, §9, §10의5 등)	20
3.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안 법§9⑦, §13⑤, §20①)	22
4. 항공기 취득세율 인용 조문 정비(안 법 §12①)	23
5. 합병에 대한 세율특례 사후관리 정비(안 법§15①)	24
6.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인용 조문 정리(안 법§22③)	25
7. 신탁 시 등록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신설(안 법 §26②)	26
8. 고급주택 취득세 종과회피 개선(영 §28④, 규칙 §7의2)	27
9.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종과 제외 연장(안 영 §28의2.16)	28
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종과제외 연장(안 영 §28의2.17 등)	29
11.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종과 및 주택 수 제외 연장(안 영 §28의2.18)	30
12. 다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강화(안 영§28의5)	31
13.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과세 배제(안 영§45②)	32
14.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정비(안 법§34)	33
15.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관련 규정 정비(안 법§57, §66 등)	34
16.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규정 일몰 연장(안 법§71③ 관련 부칙)	35
17.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법 개선(안 법§83, 영§84)	36
18.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종과세율 상향(안 법§103의3①)	37

19.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분 지방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안 법§103의3⑩)	38
20.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법인지방소득세 추가 세율 상향(안 법§103의31①)	39
21.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법§103의34②, 영§100의23①~⑤)	40
2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확대(안 법§106의2, 영§105의3)	41
23. 통합특별시 관련 재산세 규정 정비(안 법§111①)	42
24.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불가 사유 정비(안 법§111③)	43
25.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 법§111의2, 112조 관련 부칙)	44
26.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 대상 확대 및 감면특례 신설(안 법§118의2)	45
27.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안 법 §120 등)	46
28.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안 영 §101①)	47
29. 공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안 영§102①)	48
30.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 신설(안 영§102⑦)	49
31.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안 영§102⑦,⑧)	50
32. 사치성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 영§109)	51
33.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특례 규정 기준일 명확화(안 법§125 ②, ③)	52
34. 통합특별시 관련 자동차세 규정 정비(안 법§131, 영§128, §128의2, §133, §135)	53
35.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 규정 정합성 제고(안 법§145, 영§137)	54
36.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세분 지방교육세 규정 정비(안 법§151①) ..	55
37.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안 법§150~152, 안 §155~160) ..	56

IV 지방세특례제한법

1.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4②)	58
2.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①·②)	59
3.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연장(농기계, 관정시설)(안 법§7①·②)	60
4.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①)	61
5.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1①·②)	62
6.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2①)	63
7.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19의2)	64
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20)	65
9.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21①·②)	66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29)	67
11.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안 법§31②)	69
12.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안 법§31⑧)	70
13. 공공주택사업자 신축매입약정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안 법§31의5)	71
14.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31의6)	72
15.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33의3)	73
16. 청년층·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36의3)	75
17.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사항(안 법§36의3③, §73①.)	77
1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등(안 법§36의4)	79

19. 대한적십자사의료 ^외 사업 감면 연장 및 감면을 조정 등(안 법 40의3)	81
20.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안 법 41의2)	82
21.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42의3 , §44③)	83
22. 기초과학연구원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을 조정(안 법 45의2)	84
23.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 47의2 ②)	85
2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 47의3)	86
2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연장(안 법 47의5)	87
26. 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 52의2)	88
27. 기업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57의3)	89
28. 주거안정지원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57의4)	90
29.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 58)	91
3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 58의3)	93
3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 60)	94
32. 사회적기업 등(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 62의3)	95
33. 농·수협 등(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 62의4)	96
34. 농·수협 중앙회 등(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 62의5)	97
35. 협동조합 등(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본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법 62의6)	98
36.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안 법 64의4)	99
37.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 66)	100
38.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 74)	101

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법§79의2)	· 102
40.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법§80의2)	103
41.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정비(안 법§84①)	 104
42.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안 법§141①·③)	 105
43.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안 법§167의7)	· 106
44. 고급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안 법§177)	 107
45.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 감면 기한 연장(안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 108

지방세기본법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정의, 지방자치단체 세목 등 규정 ○ (정 의) ①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지방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 ○ (세 목)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주민세의 특례)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 (이의신청) ○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통합특별시’ 추가 ○ (정 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추가 ① (지방자치단체 유형 추가) - 특별시·<u>통합특별시(추가)</u>·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 - 특별시장·<u>통합특별시장(추가)</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③ (지방세 추가) - 특별시세, <u>통합특별시세(추가)</u>,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 ○ (세 목) 통합특별시 세목 체계 정비 ○ (주민세의 특례) <u>통합특별시(추가)</u>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u>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장(추가)</u> ○ (이의신청) <u>통합특별시세(추가)</u> ○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u>통합특별시장(추가)</u>

□ 개정이유

- 통합특별시가 출범됨에 따라 과세권, 지방세 세목, 권한의 범위 등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적용시기

- 2027. 1. 1. 부터 적용

2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법\$7, \$8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 신 설 > ○ (세 목)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납세의무 성립시기) ○ (이의신청)	☐ ‘지방주거복지세’ 추가 ○ (세 목) - 목적세 : <u>지방주거복지세(추가)</u>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특·통합·광역 : <u>지방주거복지세(추가)</u> - 도세 : <u>지방주거복지세(추가)</u> - 특별자치시·도세 : <u>지방주거복지세(추가)</u> ○ (납세의무 성립시기) - <u>지방주거복지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u> ○ (이의신청) <u>지방주거복지세(추가)</u> ※ 사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사군구청장에게 신청

□ 개정이유

- 지역주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 및 납세자 권리구제 사항 등을 규정

□ 적용시기

- 2027. 1. 1. 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법§34①)

□ 개정개요

※ 국세 동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 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신고납부·특별징수분 지방세의 미납부 과소납부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초과환급분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 -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성립시기 명확화 ○ <좌 동>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좌 동> - 환급받은 날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개정이유

-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명시

□ 적용시기

- 2027. 1. 1. 부터 적용

4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40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 ❶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 ❷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기간 ❸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❹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유예기간 ❺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❻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❼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 ❶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동안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지방세 징수권 확보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안 법§46)

□ 개정개요

※ 국세 일치('24.12.31.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❶ 무한책임사원 ❷ 과점주주 - (요건) 주주등 1명과 특수관계인이 ① 지분을 합계 50% 초과 & ② 실질적인 권리 행사 - (대상) 주주, 유한책임사원 ❸ <신 설>	□ 대상자 범위 확대 ❶ <좌 동> ❷ <좌 동> - (요건) 좌 동 - (대상) 좌 동 ❸ <u>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u> - (요건) 조합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① 지분을 합계 50% 초과 & ② 손익분배비율 합계 50% 초과 - (한도) 부족금액에 과점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산출금액

□ 개정이유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여 과세 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법§88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대상 ○ 감사, 지도 및 점검 결과에 따라 과세할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조사에 따라 과세할 경우 ○ 비과세·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제외)	☐ 과세예고 통지 대상 합리화 ○ (현행과 같음) ○ <u>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제외)

□ 개정이유

- 납세자 혼란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법§108)

□ 개정개요

※ 국세 일치('22.12.31. 개정)

현행	개정안																		
☐ 세무조사 거부·기피 등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 기준(영§67① 별표1)	☐ 세무조사 거부·기피 등 비협조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 ☐ 500만원 이하 → <u>5,000만원 이하</u> ☐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table><tr><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 이상 위반</td></tr><tr><td>2백만원</td><td>3백만원</td><td>5백만원</td></tr></table>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table><tr><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 이상 위반</td></tr><tr><td>2천만원</td><td>3천만원</td><td>5천만원</td></tr></table>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 개정이유

-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인상하여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세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부터 적용

□ 개정개요

※ 국세 일치('25.3.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조사 비협조 납세자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 강제금 부과, 과태료와 중복 금지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추가(법§147 개정)								
<신 설>	☐ 부과 기준·징수 방법 등 시행령에 위임규정 신설 ※ 영§67의2, [별표4] <table border="1" data-bbox="740 1182 1382 1406"> <tr> <th>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th><th>1일당 부과금액</th></tr> <tr> <td>2,000억 미만</td><td>100만원</td></tr> <tr> <td>2,000억 이상 ~5,000억 미만</td><td>200만원</td></tr> <tr> <td>5,000억 이상</td><td>300만원</td></tr> </table>	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일당 부과금액	2,000억 미만	100만원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200만원	5,000억 이상	300만원
전년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일당 부과금액								
2,000억 미만	100만원								
2,000억 이상 ~5,000억 미만	200만원								
5,000억 이상	300만원								

□ 개정이유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회피 방지 및 지방세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구원 이사 정수 및 추천 방법 등 ○ 이사 정수 : 12명 이내 ☐ 이사 선출 절차 ○ 이사 추천·선출 - (이사)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협의 추천·선출 - (이사장) 시도지사 협의 추천·선출 - (원장)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 임명 ○ (신설)	☐ 이사 정수 확대 ○ 정수 확대: 20명 이내 ☐ 원장 공개모집 등 투명성 강화 ○ 원장 공개채용 제도 도입 등 - (이사장) 시·도지사 협의 추천·선출 - (부이사장) 시·군·구청장 협의 추천·선출 - (원장) 공개모집, 원장 추천위원회 심사, 행안부장관 승인 - (그외 이사)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협의 추천·선출 ○ 이사의 구분·임기·임면 절차, 이사회 의결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근거 신설

□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의 이사 정수 확대로 지방정부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원장 후보자 공개모집 제도 의무화로 인사 운영 제도 투명성 강화

□ 적용시기

- 2027. 1. 1. 부터 적용

지방세징수법

1 통합특별시 관련 지방세징수 법령 개정(안 법§11의2, §17, §1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 신 설 > ○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 통합특별시 추가 ○ 지방자치단체 유형 신설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통합특별시,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세’ 추가

□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내 관련 조항에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세 추가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징수법」 개정 필요 조항 >

구분	조항	대상 조문	개정사항
법률	§11의2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통합특별시(장) 등 추가
	§17	•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19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적용시기

- 2027. 1. 1.부터 적용

2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안 법§32의2, §108)

□ 개정개요

※ 국세 일치('25. 12. 23.)

현 행	개 정 안
□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명시	□ 실태조사원 운영의 법적 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마련 ○ 실태조사원 및 그 업무범위(추가) ○ 비밀유지 규정(추가)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추가)

□ 개정이유

-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 보완을 위해
 - 실태조사원의 채용·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
 - 실태조사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과태료 규정 신설

□ 적용시기

- 2027. 1. 1.부터 적용

3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안 법 §61③)

□ 개정개요

※ 국세 일치('21. 12. 21.)

현 행	개 정 안
☐ 압류된 가상자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를 하여야함	☐ 압류된 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전 요구는 임의 규정*으로 하되, 이전 요구를 받은 자의 이전 의무 신설 * 가상자산 이전 없이 거래소내 계정 압류만으로도 압류 효과 달성 가능

□ 개정이유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즉시 해제 사유로 미 규정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즉시 해제 사유를 추가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4

즉시 압류 해제 사유 추가(안 법 §63①)

□ 개정개요

※ 국세 일치('23. 12. 31.)

현 행	개 정 안
☐ 압류해제의 요건(즉시 해제) ☐ 납부, 충당, 공매중지 등 ☐ 압류재산이 제3자의 재산인 경우 등 ☐ <신 설> ☐ <신 설>	☐ 압류해제의 요건(즉시 해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개정이유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즉시 해제 사유로 미 규정하여 국세와 동일하게 즉시 해제 사유를 추가

□ 적용시기

-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이 법 시행 전 압류한 재산이 이 법 시행 후 압류금지 재산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
- 체납처분을 중지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 중지를 한 경우부터 적용

5

압류한 금지금 및 외국통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법§71)

□ 개정개요

※ 국세 동반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직접매각 가능한 압류재산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추 가>	☐ 대상확대 ○ (좌 동) ○ 금지금(적격금지금융통업자)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순도 99.99% 이상인 금 ○ 외국통화(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압류재산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외 금지금 및 외국통화를 추가

※ 통화와 유사하게 관련 시장에서 즉시 매각이 가능하여 신속한 체납 정리 가능

□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금지금 및 외국통화를 직접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세법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1. 취득세 과세방안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수입수익권등) 신탁원본의 관리·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대료 등의 재산적 이익(수입수익권) + 신탁원본을 처분·매각하여 발생한 대금 등의 금전(처분·매각 대금) < 신 설 >	☐ 수입수익권 등의 수익자의 신탁 재산 취득으로 간주(법§7⑰, 신설) ○ 수익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도 지분 취득으로 간주 ○ 신탁재산이 주택이면 수익자의 주택수에 가산(법§13의3, 개정) ※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제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
☐ (취득원인) 민법상 상속인이면 상속에 따른 취득 - 민법상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면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은 현행 규정대로 적용
☐ (무상취득시기) 원칙: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은 상속개시일 또는 유증개시일	☐ (추가) 유언대용신탁 등의 위탁자 또는 직전수익자의 상속개시일(사망일)(영§20, 개정)
2. 재산세 과세방안	
☐ (납세의무자)	☐ 수입수익권 등의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법§107 개정) ※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등기·등록과 무관(일반신탁과 동일)
☐ (주택수 산정)	☐ 수익자의 주택수에 가산(법§111의2, 개정)
☐ (물적납세의무)	☐ 수익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 부여(법§119의2, 개정)

□ 개정이유

- 위탁자의 사망으로 재화 이전의 원인행위 발생 및 수익자의 실질적인 재산의 사용·수익이 있으나 근거규정 부재로 과세공백 발생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개발 등 개발사업시행자(조합)가 취득하는 체비지 과세근거 ○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지방세법(납세의무자 일반 규정)에 따라 이전고시 익일에 취득	☐ 개발사업시행자(조합)가 취득하는 체비지 과세근거 명확화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 명확화(\$7⑩2호, 신설)
☐ 재건축 등 조합주택 관련 규정(\$7⑧) ○ 재건축사업에 따른 취득 - 조합원의 취득(신축취득 등) - 조합의 취득(체비지 등)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취득 ○ 지역·직장주택 조합 관련 취득	☐ 조합주택 관련 규정을 개발사업 통합규정(\$7⑩)으로 이관·정비 ○ 삭제 (개발사업 통합규정 \$7⑩으로 이기) - 기존 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취득 규정(\$7⑩1호)으로 대체 - 개발사업시행자(조합) 규정으로 통합(\$7⑩2호, 신설) ○ 소규모정비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 함께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과세 체계를 준용(\$7⑩4호, 신설) ○ 개발사업 통합규정으로 이관(\$7⑩5호)
☐ 신탁재산 취득 비과세 제외(\$9③ 단서) ○ 조합과 조합원간 신탁 ○ 조합의 일반분양분 취득	☐ 신탁재산 취득 비과세 규정 정비 ○ 삭제(제7조제8항 삭제와 병행) ○ 현행 유지
☐ 도시개발사업 지목변경 취득 규정 ○ 제7조제4항 후단	☐ 규정 이관 ○ 제7조제16항 제3호 이관

☐ 개정이유

-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사업유형·취득 주체(조합·조합원)에 따른 개발사업 납세의무 규정 정비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안 법§9⑦, §13⑤, §20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일반) 상속개시일이 속한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다만, 피상속인의 경우는 미포함 - 상속개시일이 속한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u> -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 완화 필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항공기 취득세율 인용 조문 정비(법 §12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항공기 취득세율 ☐ <u>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u> 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 인용조문 정비 ☐ <u>항공안전법 제7조제1항 단서</u> 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 개정이유

- 항공기 취득세율 적용 대상 근거법령 명확화 필요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5

합병에 대한 서울특례 사후관리 정비(안 법§15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합병에 따른 서울 특례 사후관리 규정 ○ (적격합병)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의 계속성, 지분의 영속성, 고용 유지 등 적격합병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적격간주합병) 적격합병과 동일	☐ 적격간주합병 제외 ○ (현행과 같음) ○ (제외)

□ 개정이유

- 합병에 대한 서울특례 사후관리 규정 명확화 필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인용 조문 정리(안 법§22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 <u>자동차관리법 제5조</u> 에 따라	☐ 인용조문 정비 ○ <u>자동차등록령 제5조</u> 에 따라

☐ 개정이유

-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근거법령 명확화 필요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7

신탁 시 등록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안 법§26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신탁 재산권의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 < 신 설 >	☐ 신탁 재산권의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 신탁 재산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신설 ※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의 정합성 등 고려 ※ 세목 통합 전에는 등록세 비과세 대상

□ 개정이유

- 신탁재산의 소유권 등기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명확화 필요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8

고급주택 취득세 종과회피 개선(영 §28④, 규칙 §7의2)

□ 개정개요

※ 2025년 「지방세법」 개정 후속조치

구 분		현 행		개 정	
면적 & 가격	단독주택	면적 건물 331㎡ ↑ 토지 662㎡ ↑	가격 & 공시 가격 9억원	면적 • 수도권 : <u>현행과 동일</u> 비수도권 : <u>현행 대비 150%</u> (건물: 497㎡, 토지: 993㎡)	가격 & 공시 가격 12 억원 (시가 18억원)
	공동주택	245㎡ ↑ (복층 274㎡ ↑) : 전체면적 - 공용면적(한도없음)		• 수도권 : <u>현행과 동일</u> 비수도권 : <u>현행 대비 150%</u> (단층: 368㎡/복층: 411㎡) • <u>공용면적 제외 시 한도설정</u> = 전용면적의 100% + 관련법상 필수 설치 시설면적* * (예)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의 세대당 설치 기준 • 한도 외 초과면적 → 전용면적으로 간주	

□ 개정이유

- 초고가 주택의 종과 회피 방지, 지역별 과세 형평 제고 등을 위해 공용
면적 제외 한도*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 등 고급주택 종과 기준 개선

* 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제외한 초과면적은 전용면적으로 간주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CR리츠가 지방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중과제외 ☐ (중과제외 요건) - 지방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최초 유상승계취득 ☐ (중과제외 기간) - 2024. 3. 28. ~ <u>2026. 12. 31.</u>	☐ 중과제외 일몰 연장 ☐ (현행과 같음) ☐ (제외기간) 1년 연장 - 2024. 3. 28. ~ <u>2027. 12. 31.</u>

□ 개정이유

- CR리츠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연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연장(영 §28의2 17호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중과제외 등 *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 '26.1.1.~'26.12.31.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매입한 경우 * 전용면적 85㎡ & 취득가격 6억원 이하 - (중과 제외) ~26.12.31. - (주택 수 제외 효과) ~27.12.31. ○ '24.1.10.~'25.12.31.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최초 매입한 경우 * 전용면적 85㎡ & 취득가격 6억원 이하 - (주택 수 제외 효과) ~27.12.31.	□ 중과제외 등 연장 ○ 현행과 같음 - (중과 제외) ~27.12.31. - (주택 수 제외 효과) ~28.12.31. ○ 현행과 같음 - (주택 수 제외 효과) ~28.12.31.

□ 개정이유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제외 등 연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인구감소지역 민감임대주택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 요건 ①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 취득 후 60일 내 등록 필요, 임대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 시 제외 ②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③ (취득기간) '26.1.1. ~ '26.12.31.	☐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일몰 연장 ○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년 연장) '26.1.1. ~ '27.12.31.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일몰연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다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강화(안 영§28의5)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으로 동일	☐ (조정 + 조정 추가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양도세·종부세 동반 개정 ☐ (비조정 + 조정 추가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중과 및 주택 수 제외 일몰연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2026. 8. 26.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13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배제 (안 영§45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도시 법인 <u>등기*</u> 시 등록면허세 <u>중과세 제외 대상</u> * 설립, 자본증가 등 ○ 5년 이상 내국법인의 적격 분할 <u>설립 등기 등</u> ○ < <u>신 설</u> >	☐ <u>협동조합 출자금 증자 등기 시</u> <u>중과세 제외 신설</u> ○ (<u>현행과 같음</u>) ○ 협동조합의 자본금 증자

□ 개정이유

- 대도시 내 협동조합·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를 통한 사회연대 경제 지원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14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정비(안 법§34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 시·군의 세율 정의(법§34①) -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지역으로 구분 ○ 특별자치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세율(법§34②)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洞)지역은 인구 50만명 이상 시 또는 그 밖의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지역으로 봄 ○ 특·광역시의 세율(법§34③) - 특·광역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로 보고,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봄	□ 통합특별시 출범 반영한 등록면허세 세율 정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통합특별시 세율 신설(법§34③) - 통합특별시를 인구 50만명 이상 시로 보고, 통합특별시 내 인구 50만 미만 시는 그 밖의 시, 통합특별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봄. 다만, 통합특별시 내 도농복합시는 제2항에 따름.

□ 개정이유

- 통합특별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명확성 제고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 <신 설>	☐ 통합특별시 추가 ○ (현행과 같음) ○ 통합특별시
☐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 설>	☐ 통합특별시장 추가 ○ (현행과 같음) ○ 통합특별시장

□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26.7.1.)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형에 '통합특별시(장)'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규정 정비 필요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16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비 보전 규정 일몰 연장(안 법§71조③ 관련 부칙)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비세 1·2단계 전환사업비 보전에 대한 일몰 규정 ☐ 2026.12.31.까지	☐ 일몰기한 3년 연장 ※ 부칙 개정 사항 ☐ 2029.12.31.까지

□ 개정이유

- 전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17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법 개선(안 법§83, 영§84)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법 ※ 신고납부(원칙) + 사전 납부서 발송(선택) ○ 8.1일부터 8.31일까지 신고납부 ○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 발송 가능 ○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간주 ○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특례가 '26년 末 종료 예정(부칙 12조)	□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방법 개선 ※ 부과징수(원칙) + 신고납부(선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세액을 결정하여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부과·징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고지서를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 신고납부 방법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가능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과징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함

□ 개정이유

-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

□ 적용시기 : 개별 적용례 불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18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

(안 법§103의3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기본 세율(0.6~4.5%) + <u>1%p</u> 중과세	☐ 중과세율 상향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기본 세율(0.6~4.5%) + <u>2%p</u> 중과세

☐
개정이유

-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
적용시기

- 202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분 지방소득세 중과 ☐ (2주택) 기본세율(0.6~4.5%) + 2%p <단서 신설> ☐ (3주택 ↑) 기본세율(0.6~4.5%) + 3%p <단서 신설>	☐ 중과세율 한시 완화 ☐ (좌 동)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양도기간</th><th>중과세율</th></tr> </thead> <tbody> <tr> <td>'27.1.1.~'27.12.31.</td><td>+0.5%p</td></tr> <tr> <td>'28.1.1.~'28.12.31.</td><td>+1%p</td></tr> </tbody> </table> ☐ (좌 동)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양도기간</th><th>중과세율</th></tr> </thead> <tbody> <tr> <td>'27.1.1.~'27.12.31.</td><td>+1%p</td></tr> <tr> <td>'28.1.1.~'28.12.31.</td><td>+1.5%p</td></tr> </tbody> </table>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0.5%p	'28.1.1.~'28.12.31.	+1%p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1%p	'28.1.1.~'28.12.31.	+1.5%p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0.5%p												
'28.1.1.~'28.12.31.	+1%p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1%p												
'28.1.1.~'28.12.31.	+1.5%p												

□ 개정이유

-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특례규정

-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7년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0.5%p, 3주택 이상 +1%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추가과세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1%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 추가과세 세율 상향 ☐ 1% → 2%

□ 개정이유

-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 적용시기

- 202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법§103의34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영) 연결법인의 차감액 계산 및 이월 방법 등 규정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법인세법」 제57조의2

□ 개정이유

- 연결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타당성 평가 대상 ○ 분리과세대상을 확대·추가 또는 축소·정비하려는 경우 타당성 평가 선행	☐ 재산세 타당성 평가 대상 확대 ○ 별도합산과세대상도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개정이유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같이 타당성평가 실시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확대·추가 또는 축소·정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거지역(읍·면 제외)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 ☐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 등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 재산세율 : 0.5%* * 그 외 지역 세율 0.25%의 2배	☐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과 동일하게 세율 적용 유지 ☐ 통합특별시의 경우 종전(통합전) 지역과 동일한 세율 적용 - 재산세율 0.5% 적용지역 추가 : 통합특별시(시·군지역 제외)* * 통합전 광주광역시 구지역

□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산세 조문 정비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4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불가 사유 정비(안 법§111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탄력세율 요건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 ○ < 추가 >	☐ 재산세 탄력세율 요건 보완 ○ (좌동) ○ 탄력세율 제한 요건 보완 - 부동산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경우 -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산세 세부담 조정이 가능
 -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력세율 조정은 불가하도록 요건 추가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 적용기간 : '26년까지 * 1세대 1주택(9억원 이하)에 대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 연장 ☐ 재산세 세율 특례 기간 연장(3년) - 적용기간 : '29년까지

□ 개정이유

- 1주택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납부 유예 요건 ◦ ❶~❺ 모두 충족 ❶ 1세대 1주택자 ❷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❸ 만 60세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❹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❺ 직전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신 설>	☐ 납부 유예 소득요건 완화 및 확대 ◦ ❶~❺ 모두 충족 [- (좌 동)] ❺ 직전연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납부유예* 이자상당가산액 감면 특례 신설 * 일정 요건 충족시 주택 처분시점 등 까지 납부를 유예 ◦ (요건) 납세담보로 납세보증 보험증권 제출 ◦ (특례)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 상당가산액* 감면 * 납부유예 세액 × 지방세기본법상 이자율(3.1%) ◦ (한도) 유예기간 동안 납부한 보증보험 보험료

□ 개정이유

- 소득창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 등의 납부유예 제도 활용도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7 법인 보유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안 법§120 등)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토지이용현황 변경시 과세절차 ○ 토지 이용현황 변경*시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규정 * (예) 소유권 이전 등 등기 변동 사항, 상속 미등기 납세자 등 - 분리과세대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음 ※ 시행령 임의규정 ⇒ 미신고시 직권 등재(패널티 無)	□ 법인 소유 토지는 이용현황 변동신고 의무 개별 규정 ○ 좌 동 ○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함 - 종합·별도 → 별도 or 분리 - 별도·분리 → 별도 or 종합 ※ 대상 확대 및 강행규정으로 상향 입법 ⇒ 미신고시 과표 10%를 가산(개인 제외)하여 직권등재

□ 개정이유

- 법인 보유 토지의 이용현황 변동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부여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8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안 영§101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가액의 <u>100분의 2에 미달</u>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 별도합산 배제 * 경제적 사용 여부 무관 적용 배제	□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 부속토지 인정기준 강화 ○ (개인) 좌 동 ○ (법인)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u>100분의 5에 미달</u>하는 경우* 별도합산 배제 *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 적용

□ 개정이유

- 종합합산과세 회피를 방지하고, 토지의 실질적 이용에 따른 과세 형평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9 공장용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강화(안 영§102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 실제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 제외 ○ 실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 제외

□ 개정이유

- 장기간 미사용 토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방지하고 과세형평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발사업용 토지 등의 분리과세 적용 기간 ○ 적용기간 - 개발사업(주택·산단)용 토지 : 실시계획 고시일 ~ 공사완료 - 산업단지조성공사용 토지 : 착공일 ~ 준공인가 또는 공급일 중 빠른날 -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 사업계획승인일 ~ 준공시점 <신 설>	☐ 분리과세 적용 기간 한도 설정 좌 동 ○ 적용기간에 한도 신설 - 개발사업(주택·산단)용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용 토지 : 10년 -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 5년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은 각각 3년 추가 인정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

□ 개정이유

- 장기 미착공·중단 사업의 장기간 세제혜택을 방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유도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1 분리과세대상 토지 일몰기한 신설(안 영§102⑦,⑧)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대상 토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21년 이후부터 신설된 규정은 일몰 적용	☐ 분리과세 일몰기한 설정 ○ 기존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성격에 따라 유형화 하여 일몰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

□ 개정이유

-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세제지원의 합리성과 과세형평을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2 사치성재산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 영§10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u>70%</u>	☐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 (현행)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u>70%</u> ☐ (개정)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u>100%</u>

□ 개정이유

- 사치성재산(회원제,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세부담 역전 현상을 해소하여 고율 분리과세의 취지를 구현하고 과세형평을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3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특례 규정 기준일 명확화(안 법§125 ②, ③)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특례 관련 기준일 규정 ① <u>과세기준일 현재</u>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인*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위로 결정 ② <u>과세기준일 현재</u> 공매 낙찰되어 대금 납부하였으나,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 → 현행 「지방세법」 상 <u>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미규정</u>	□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특례 규정 기준일 명확화 ① <u>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 현재</u>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이전 등록 하지 않은 경우 ② <u>납기가 있는 달의 1일(6.1., 12.1.) 현재</u> 공매 낙찰되어 대금 납부 하였으나,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목</th><th>납세의무 성립시기</th></tr> </thead> <tbody> <tr> <td>주민세</td><td>과세기준일(7.1.)</td></tr> <tr> <td>재산세</td><td>과세기준일(6.1.)</td></tr> <tr> <td>자동차세</td><td>납기가 있는 달의 1일</td></tr> </tbody> </table>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주민세	과세기준일(7.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주민세	과세기준일(7.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개정이유

- 상속 개시, 공매 매수대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자동차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 명확화'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34 통합특별시 관련 자동차세 규정 정비(안 법§131 등)

□ 개정개요

현행	개정안																														
□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범위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기준 등의 관할 자치단체의 범위	□ 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범위 정비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기준 등의 관할 자치단체의 범위에 통합특별시 추가																														
<table><tr><th>구분</th><th>규정</th><th>관할 범위</th></tr><tr><td>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td><td>법§131, 영§128</td><td>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td></tr><tr><td>영치 일시해제</td><td>영§128의2</td><td>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td></tr><tr><td>자동차세 주행분 안분기준</td><td>영§133</td><td>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td></tr><tr><td>자동차세 주행분 세액통보</td><td>영§135</td><td>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td></tr></table>	구분	규정	관할 범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법§131, 영§128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영치 일시해제	영§128의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기준	영§13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자동차세 주행분 세액통보	영§135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table><tr><th>구분</th><th>규정</th><th>관할 범위</th></tr><tr><td>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td><td>법§131, 영§128</td><td>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위임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지사)</td></tr><tr><td>영치 일시해제</td><td>영§128의2</td><td>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td></tr><tr><td>자동차세 주행분 안분기준</td><td>영§133</td><td>특별시·통합특별시(시·군 제외)·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 한정) 및 시·군</td></tr><tr><td>자동차세 주행분 세액통보</td><td>영§135</td><td>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td></tr></table>	구분	규정	관할 범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법§131, 영§128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 위임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영치 일시해제	영§128의2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기준	영§133	특별시· 통합특별시(시·군 제외)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 한정) 및 시·군	자동차세 주행분 세액통보	영§135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구분	규정	관할 범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법§131, 영§128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영치 일시해제	영§128의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기준	영§13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																													
자동차세 주행분 세액통보	영§135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구분	규정	관할 범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법§131, 영§128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 위임권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영치 일시해제	영§128의2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자동차세 주행분 안분기준	영§133	특별시· 통합특별시(시·군 제외) ·광역시(군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도 한정) 및 시·군																													
자동차세 주행분 세액통보	영§135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동차세 조문 정비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35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 규정 정합성 제고(안 법§145, 영§137)

□ 개정 개요

현 행	개 정 안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 ○ < 신 설 >	○ 항만예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 ※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 정합성 제고

□ 개정이유

-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
- 시행령에서 항만예선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하여 과세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민세분 지방교육세 세율 ○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 세액의 각 100분의 10(§151①5) -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100분의 25 ○ 세부규정 신설 ※ 기존에는 세부규정 없이 등록면허세의 유사한 구조 규정*에 따라 해석상 운영 * 특·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포함하고, 광역시 군 지역은 군으로 간주(「지방세법」§34③))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별도 적용 기준 규정(법§151③) - “인구 50만 이상의 시”란 동지역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 해당 시의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의 세율 적용	□ 통합특별시 출범 반영한 주민세분 지방교육세 세율 규정 정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통합특별시 반영 및 기준 명확화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포함 명시 - ①통합특별시의 인구 50만 미만 시, ②통합특별시·광역시의 군 지역은 100분의 10의 세율(군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명시 ○ 별도 적용 대상에 특별자치시 포함

□ 개정이유

- 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반영하여 세율 적용 규정을 정비하고, 별도 적용 기준에 기존 도농 복합형태의 시 외에도 특별자치시 추가 필요

□ 적용시기

- 2027. 1. 1. 법 시행 이후

37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 전환(법§150~152, §155~160)

□ 개정 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담배분 지방교육세 ○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부칙<법률 제10221호> 제1조의2(적용시한))	□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및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영해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 삭제 등 정비 ○ 지역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등을 규정

□ 개정이유

-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조항 정비 및 신설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1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4②)

□ 개정 개요

현 행	개 정 안
☐ 조례감면 불가 사유 ○ 과세의 형평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 조례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u>지방자치단체 주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u> 과세의 형평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u>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u> 및 <u>부동산 취득·보유에 관한 과세정책</u> 등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 개정이유

- 지방정부 내 주민 간 또는 지방정부 간 과세형평 침해, 타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조례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6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 자경농민의 농지 등 ○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 일몰 3년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u>2029.12.31.</u>
☐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 취득세 50% ○ (일몰기한) <u>2026.12.31.</u>	☐ 일몰 3년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u>2029.12.31.</u>

□ 개정이유

- 농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연장(농기계, 관정시설)(안 법§7①·②)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농기계에 대한 감면 ☐ 취득세 면제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면제 ☐ (일몰기한) <u>2026.12.31.</u>	☐ 감면 연장 ☐ (좌 동)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u>2029.12.31.</u>

□ 개정이유

- 농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법§9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자영어민의 어업권 등 ○ 취득세 50%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 해수양식어업 -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 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 (일몰기한) <u>2026.12.31.</u>	☐ 감면 연장 및 조문 정비 ○ (좌 동) - (좌 동)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 인용조문 정비 - (좌 동) ○ (일몰기한) <u>2029.12.31.</u>

□ 개정이유

- 어업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면 연장 하되, 인용 조문 정비를 통한 감면 대상 명확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설립 초기 농업법인의 영농목적 부동산 ○ 취득세 75% 감면	☐ 감면 연장 ○ (좌 동)
☐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 목적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감면 기한 제한 없음 ○ (일몰기한) <u>2026.12.31.</u>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u>2029.12.31.</u>

□ 개정이유

- 농업법인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법§12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영어법인의 영어·유통·가공 목적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일몰기한) <u>2026.12.31.</u>	☐ 감면 연장 ○ (좌 동) ○ (일몰기한) <u>2029.12.31.</u>

□ 개정이유

- 어업법인에 대한 지속 지원을 통해 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과 어업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7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연장(법 §19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 지역아동센터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 돌봄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맞벌이 아동의 복지 증진 도모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법 §20)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경로당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자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 수요 대응 및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속 필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법§21①·②)

□ 개정개요

현 행	정부안
☐ 청소년단체 직접사용 부동산 ○ (감면대상) 청소년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① 스카우트주관단체 ② 한국청소년연맹 ③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단체) ○ (감면내용) 취득세75%,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6.12.31.	☐ 일몰 3년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청소년수련시설용 직접사용 부동산 ○ (감면대상)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취득세100%,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6.12.31.	☐ 일몰 3년 연장 및 재설계 ○ (현행과 같음)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청소년 교육·활동 및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연장(법 §29)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자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사업소분연면적, 종업원분)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內 부동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단체 등의 자활용사촌內 부동산 -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자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6.12.31.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보훈 대부 및 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속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생계 안정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공공·민간임대주택 동일하게 적용	☐ 감면요건 완화 ☐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실제로 입주 사실이 있어도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감면 연장(안 법§31⑧)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공공주택사업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율) 재산세 25% 경감(3년간) ○ (일몰기한) 2026.12.31.	□ 일몰 3년 연장 ○ (좌동)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지분적립형분양주택에 대한 공급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 도모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공공주택사업자의 신축매입약정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건축하여 매도하기로 약정한 자 ☐ (감면대상)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 (감면율) 취득세 15% ☐ (일몰기한) '27.12.31.까지	☐ 감면율 확대 ☐ (좌동) ☐ (좌동) ☐ (감면율) 취득세 <u>70%</u> (~'27년) <u>50%</u> (~'28년) <u>15%</u> (~'29년) ☐ (좌동)

□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주택 건축 활성화 필요
-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도모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신설	□ 준주택 용도변경에 따른 대수선 취득세 면제 ○ (감면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수선을 통해 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감면율) 취득세 면제 ○ (일몰기한) '27.12.31.까지

□ 개정이유

- 유휴공간인 비주택(근생 등)을 주거용 시설인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단기적인 공급 효과 및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사업주체) ○ (감면대상) 신축하여 '24.1.10.부터 '26.12.31.까지 취득하는 아파트 ○ (감면요건) ①준공 후 미분양, ②수도권 외 지역, ③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④'26.12.31.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2년 이상 임대 ○ (감면율) 취득세 25%(조례25%) ○ (추징요건) 임대기간 2년 미만 매각·증여 및 타 용도 사용	☐ 일몰 1년 연장 ○ (감면대상) 신축하여 '24.1.10.부터 '27.12.31.까지 취득하는 아파트 ○ (감면요건) ①준공 후 미분양, ②수도권 외 지역, ③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 ④'27.12.31.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2년 이상 임대 ○ (좌동) ○ (좌동)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감면(수분양자) ○ (감면대상) 아파트 ○ (감면요건) ①준공 후 미분양, ②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거래 취득하는 아파트로서 입주기간 1년 미만 ③수도권 외 지역, ④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일몰 3년 연장 및 재설계 ○ (좌동) ○ (좌동)

○ (감면율) 취득세 25%(조례25%)	○ (좌동)
○ (신설)	○ (감면 한도) 150만원 (별75만원+조례75만원)
○ (일몰기한) '26.12.31.	○ (일몰기한) ' <u>27.12.31.</u>
○ (신설)	○ 추정사유 신설 - <u>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u>

□ 개정이유

- 사업주체 및 개인이 취득하는 지방소재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지원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 (감면대상) 12억 이하의 <u>주택</u> - (감면율) 면제(300만원 限) ① ^{전용면적} 60㎡이하·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②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③ (신설)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후 처분 - 非도시지역 등 ^{전용면적} 20㎡이하인 주택 또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처분 - 전세사기피해주택 - (신설) ○ (일몰기한) '28.12.31.까지	□ 감면 확대 ○ (좌동) - (추가) 12억 이하의 <u>주택(오피스텔 포함)</u> ○ (좌동) ① (좌동) ② (좌동) ③ <u>40세 미만인 자</u>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u>소형 오피스텔·소형주택*</u>(아파트 제외) <u>취득 후 처분한 경우(1회 한정)</u> * 전용면적 40㎡이하 &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 (좌동)

□ 개정이유

- 청년층 등 사회초년생, 서민의 주택 취득 지원을 위해 감면한도 및 감면기회 확대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면제요건)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u>시·군</u>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 (현행과 같음)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u>시·군·구</u>(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특별시장·<u>통합특별시장</u>·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

	하는 법인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대체취득 부동산 소재지 (감면요건)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생략) 다.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현행과 같음) 가. 특별시· <u>통합특별시</u>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생략) 다. 잇닿아 있는 특별시· <u>통합특별시</u>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개정이유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불이익 배제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등(안 법§36-4)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감면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 ○ (감면율) - 취득세 면제(200만원 限) - 재산세 ┌ 60㎡ 이하 50% 감면 └ 60㎡ 초과 25% 감면 - 등록면허세* 면제 *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 (일몰기한) '26.12.31. ○ (신설) ☐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 ○ (감면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6.12.31.	☐ 일몰 3년 연장 및 재설계 ○ (좌동) ○ (좌동) ○ (좌동) ○ (일몰기한) '29.12.31. ○ 추정사유 신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일몰 3년 연장 ○ (좌동) ○ (좌동) ○ (일몰기한) '29.12.31.

☐ 개정이유

- 전세사기피해가 지속되는 점 등 고려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속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대한적십자사(의료外 사업)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조정(법 §40조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대한적십자사(의료外 사업)에 대한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50% * 의료업은 제외(의료업은 제1호에 별도규정)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조정 ☐ (현행과 같음)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재난 시 구호활동 지원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책무 이행 등 공익적 감면 필요성은 인정되나,
 - 타 기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 지방대학 수익용기본재산 감면 ○ (감면대상) 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① 또는 ②) ①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축물 ②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매각 후 3년 이내 취득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 ②의 경우 종전토지 매각대금 한도로 감면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6.12.31.	☐ 일몰 3년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지역균형발전, 소멸위기 지방대학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활력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감면 ☐ (감면대상)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 전공대학 산학협력단 포함 ☐ (감면율) 취득세·재산세 75% ☐ (일몰기한) 2026.12.31.	☐ 일몰 3년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2 기초과학연구원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조정(법 §45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초과학연구원 등에 대한 감면 ☐ 연구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조정 ☐ (현행과 같음) - 취득세·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연구개발·기술지원·원천기술확보 등 국가기술발전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 일반 공공기관의 감면 체계 및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을 받은 건축물 ○ (감면율) 취득세 15 ~ 20% - (+), 1 ~ 3등급 : 20% - 4등급 : 18% - 5등급 : 15%	□ 일몰 3년 연장 및 재설계 ○ (감면대상)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u>인증의무대상은 제외</u>)을 받은 건축물 ○ (감면율) 취득세 20 ~ 30% - (+), 1 ~ 2등급 : 30% - 3 ~ 5등급 : 20%

□ 개정이유

-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 (감면율) 취득세 10% ☐ (일몰기한) 2026.12.31.	☐ 일몰 3년 연장 및 재설계 ☐ (감면대상) 좌동 ☐ (감면율) 취득세 20%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설치 의무가 없는 자 限) ○ (감면율)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감면대상) 현행과 같음 ○ (감면율)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민간 자본의 충전 인프라 구축 유도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정 부 안				
☐ 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 부동산 감면 ○ (감면대상) - 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8곳) <tabl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 화 예 술</td> <td>예술의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체 육 진 흥</td> <td>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td> </tr> </table> - 문화예술사업·체육진흥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u>취득세·재산세 50%</u> ○ (일몰기한) <u>2026.12.31.</u>	문 화 예 술	예술의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체 육 진 흥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 일몰 3년 연장 및 재설계 ○ (현행과 같음) ○ (감면내용) <u>취득세·재산세 25%</u> ○ (일몰기한) <u>2029.12.31.</u>
문 화 예 술	예술의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체 육 진 흥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 개정이유

- (연장) 대중의 문화향유 및 체육진흥활동 활성화 지원
- (재설계) 중복지원 및 타 공공기관 감면과의 형평성 고려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기업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법 §57조의3)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자산매입 감면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 중소기업의 자산 매입·재임대 -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중소기업이 자산 재매입 감면 ○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및 유동성 공급을 통한 일시적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사업 영속성 확보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택담보상환 연체자의 자산 매입 감면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상환 연체자의 주택을 임대조건부로 매입 -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대출금 상환 및 채무조정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29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58)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사업시행자 부동산 감면 ○ 취득세 35%, 재산세 35%(비수도권 60%) ○ (일몰기한) <u>2026.12.31</u>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부동산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50%(비수도권 60%) ○ (일몰기한) <u>2026.12.31.</u>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신·중축 건축물 감면 ○ 취득세 50% 재산세 3년 50%(비수도권 60%) ○ (일몰기한) <u>2026.12.31.</u>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u>15%~50% 감면</u> (수도권 15% 비수도권 35% 인구감소지역 50%) 재산세 <u>15%~75% 감면(5년간)</u> (수도권 1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 ○ (일몰기한) <u>2029.12.31.</u>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u>35%~60% 감면</u> (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재산세 <u>35% ~ 75% 감면(5년간)</u> (수도권 3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 ○ (일몰기한) <u>2029.12.31.</u>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취득세 <u>35%~60% 감면</u> (수도권 35% 비수도권 50% 인구감소지역 60%) 재산세 3년 <u>35% ~ 75% 감면</u> (수도권 35 비수도권 60% 인구감소지역 75%) ○ (일몰기한) <u>2029.12.31.</u>

□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입주환경 개선을 통한 벤처육성 및 신기술창업 촉진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 지원 필요성 인정
- 다만, 벤처기업직접시설 수도권 편중현상에 따라 지역별 감면율을 차등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外 - 취득세 75%, 재산세 100% ^{3년간} , 50% ^{2년간}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현행과 같음) - 수도권 外 ※ (조문정비) 감면대상 지역 명확화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창업하는 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75%, 재산세 100% ^{3년간} , 50% ^{2년간}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지방 창업 활성화 유도 및 창업·벤처기업의 조기 안착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
- 수도권 외 창업 및 부동산 취득 요건과 동종 사업 인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정비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 연장(법 §60)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제외)에 대한 감면 ○ 창업보육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재산세 50% (비수도권 재산세 60%)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학교)에 대한 감면 ○ 창업보육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종료) 100%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창업 현황을 반영한 창업기업 발굴과 인프라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다만,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특례 최소화 원칙에 따라 목적세적 성격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감면 종료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감면 ☐ (신 설) ☐ (신 설) ☐ (신 설)	☐ 감면 신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취득세, 재산세(5년간) 55~100% 감면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 취득세, 재산세(5년간) 25% 감면 ☐ (일몰기한) 2029. 12. 31.

□ 개정이유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필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감면 ☐ (신 설) ☐ (신 설)	☐ 감면 신설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 취득세, 재산세(5년간) 75~100% 감면 ☐ (일몰기한) 2029. 12. 31.

□ 개정이유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 및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감면 재설계

※ (법§14③, §87 등) 농·수협 등에 대한 현행(취·재 100%) 감면 규정은 일몰 종료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이 법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산세 감면 적용

농·수협 중앙회 등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안 법§62조의5)

현 행	개 정 안
☐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감면 ○ (신 설)	☐ 감면 신설 ○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 취득세, 재산세(5년간) 25% 감면
○ (신 설)	○ <u>(일몰기한) 2029. 12. 31.</u>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연대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대 및 사회연대경제기업 간 형평
성을 고려하여 현행 감면 재설계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이 법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2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산세 감면 적용

협동조합 등(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법§62조의6)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감면 ○ (신 설) ○ (신 설)	☐ 감면 신설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등 -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50% 감면 ○ <u>(일몰기한) 2029. 12. 31.</u>

□ 개정이유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필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친환경 선박에 취득세 감면 ☐ 취득세율 <u>1~2% 경감</u> ☐ (일몰기한) <u>2026.12.31.</u>	☐ 세율경감 → 세액감면 형태로 재설계 및 감면연장 ☐ 취득세액 <u>50% ~ 100% 경감</u> ☐ (일몰기한) <u>2029.12.31.</u>

□ 개정이유

-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및 해운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에 기여를 위해 감면 연장하되,
- 다른 유사 감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설계(세율경감→세액감면)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7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법 §66)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 - 취득세 100%(140만원 限)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및 재설계 ☐ 전기자동차 ※ <u>취득일 현재 전기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u> - 취득세 100%(70만원 限)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취득 단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전기차 전환 유도 및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
 -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원 목적 달성 및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한도 축소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8 재개발조합이 취득하는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74⑥)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 (일몰기한) '28.12.31.까지 ○ (신설)	□ 감면 확대 ○ (좌동)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u>취득세 면제</u>(~27년) - <u>취득세 75%</u>(~28년) - <u>취득세 50%</u>(~29년)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보유한 종전 자산 ※ 공급대책 발표일('26.8.13.)이후 관리 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에 한정 ○ 추정사유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미착공

□ 개정이유

-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 착공 유도하여 부동산 공급 확대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법 §79조의2)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사업장 <u>청산·양도</u>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할 것 -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업종*을 영위할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u>세분류 기준</u> 동일 ○ (감면율) 취득세 50%, 재산세 75%^{5년간} ※ (취득세) 조례로 50%p 추가 可 ○ (추징 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 해외사업장을 <u>청산·양도</u>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선정일부터 4년 이내 해외사업장 <u>청산·양도·축소·유지</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u>중분류 기준</u> 동일 ○ (현행과 같음) ○ (추징 요건) - <u>청산·양도 또는 축소</u>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청산·양도 또는 축소를 조건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만 적용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특구 內 창업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100% ^{5년간} * 수도권은 100%(3년간), 50%(2년간) ※ 조례로 취득세 ±50%(수도권 ±25%), 재산세 +5년, ±50% ○ 본점 등 이전(수도권→특구)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100% ^{5년간} ※ 조례로 취득세 ±50% 재산세 +5년, ±50% ○ 특구 內 <u>공장</u> 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75% ^{5년간} * 수도권은 35% ※ 조례로 취득세 ±25% ○ (일몰기한) 2026.12.31.	☐ 감면 연장 및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특구 內 <u>산업용 건축물</u> 등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감면대상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 외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도모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41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 정비(안 법 §84①)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	☐ 인용조문 정비 ☐ 주택 ※ 지특법§2 정의규정에 따름

□ 개정이유

- 감면 규정 명확화로 합리성 제고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서울시 외 지역 소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 - '95.11.1.~'97.12.31. 또는 '98.3.1.~'98.12.31. 중 취득 - 5년 이상 보유·임대 <추 가> ○ (특례) 다음 중 선택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 2% 적용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율 0.6~4.5% 적용	☐ 양도기한 설정 ○ (좌 동) - 다음 기한 이내 양도 ▪ (수도권 아파트) '29.12.31. ▪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 (좌 동)

□ 개정이유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 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특례)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시 중과·추가 과세 세율 완화(중과·추가과세 세율의 50% 적용) - (개인) 2주택 +1%p, 3주택 이상 +1.5%p(기본세율 0.6~4.5%에 가산) - (법인) 1%(법인지방소득세 추가과세) ○(적용기간) '28.1.1.~'28.12.31. 양도분* * ①'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③재건축 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 ①의무임대종료일, ②지정 공고일, ③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 경과 2년 이내

□ 개정이유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 적용시기

- 2028.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4 고급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안 법§177)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감면 적용 제외대상 규정 ○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부동산</u>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각 호)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감면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 ○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부동산 등(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포함)</u>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고급주택 정의 변경 ※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 개정이유

-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 (감면내용)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 공제·감면 ☐ (일몰기한) 2026.12.31.	☐ 일몰 3년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2029.12.31.

□ 개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부담 완화, 국세와의 통일성 도모

□ 적용시기

- 2027.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